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0,529,294	10,215,879
일반회계	293,466,722	8,804,002
특별회계	47,062,572	1,411,877
기타특별회계	47,062,572	1,411,87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32,353	117,971
수질개선특별회계	19,997,091	599,913
농촌주택특별회계	15,209	45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37,909	16,137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3,444,199	103,326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81,378	8,44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145,313	304,359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000,255	120,0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1,211	21,036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888,073	116,642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19,581	3,587

제 2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55,86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 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